공고 제 23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03월 24일

자양제2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강 *정	강 *정 1969-08-18	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2라길 (자양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03-16
송 *천	송 *천 1957-11-15	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(자양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1-03-16